

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
우리 회사는 2017년 4월 2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3 규정에 의한 회사 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. 이 결의에 의하여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,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6조, 제527조에 의거 창립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에 따라 분할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에게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.

1. 분할방법

구분	회사명	사업부문	역할
분할되는 회사	제일약품(주)	의약품 제조 및 판매	사업회사
분할회사, 분할존속회사	제일파마홀딩스(주)	투자사업부문	지주회사
인적분할신설회사	제일약품(주)	의약품 제조 및 판매	사업회사

2. 분할진행 결과

- 가.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: 2017년 2월 2일
- 나.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: 2017년 4월 27일
- 다. 분할기일 : 2017년 6월 1일
- 라. 창립총회 공고 갈음 이사회 결의 : 2017년 6월 1일
- 마. 등기 예정일 : 2017년 6월 2일

3 대표이사 및 임원 선임

- 가. 대 표 이 사 : 성석제
- 나. 사 내 이 사 : 성석제, 한상철, 소동준, 김정진
- 다. 사 외 이 사 : 김진성, 정호상, 김오식

4. 참고사항

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,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는 회사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.

2017년 6월 1일

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343

제일약품(주) (인적분할신설회사)

대표이사 성 석 제